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수상구조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세분하고 보수교육의 이수기간을 변경하는 등 제도를 보완함.
 - 수상구조사 자격을 지도사 및 1·2급으로 구분하고(안 제30조의2), 기존 수상구조자 자격 소지자에게 개정 법률에 따른 수상구조사 1급 자격을 인정함(안 부칙 제3조).
 - 수상구조사 자격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은 자격증 발급일 또는 직전 보수교육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연내에 이수하도록 함(안 제30조의7).
- 인명구조 관련 민간자격 소지자를 수상구조사로 포섭·관리할 수 있도록 민간자격 소지자에게 수상구조사 특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
 -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민간단체의 인명구조 관련 자격 소지자는 특례시험을 거쳐 개정 법률에 따른 수상구조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II. 검토의견

- 수상구조사와 민간자격의 소지자는 모두 「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 제1항제5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에 해당하며, 「수상레저안전법」의 인명구조요원을 인용하는 타 법에서도 그 자격의 효력이 인정됨.¹⁾

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 ①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사업장 내 인명구조요원이나 래프팅가이드의 배치 또는 탑승

6.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이나 래프팅가이드의 자격 및 배치기준, 제1항제6호에 따른 비상구조선의 배치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4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이나 래프팅가이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인명구조요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별표 12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중 해양경찰청장이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이 조 및 별표 12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인명구조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 민간자격 중 인명구조강사 자격은 인명구조요원 교육을 위하여 인명구조요원 중 일정한 교육을 거쳐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자격으로(해양경찰청고시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규칙」 별표1),²⁾ 인명구조요원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는 인명구조요원에 해당함.

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이 이에 해당함.

2) 동 고시는 「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인명구조요원 등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위임을 받아 마련된 것임.

구 분		「수상레저안전법」상 지위	요원 양성 교육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인명구조요원	불가
민간자격	인명구조강사	인명구조요원	가능
	인명구조요원	인명구조요원	불가

-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기존 수상구조사 자격 소지자와 민간단체의 인명구조 관련 자격 소지자에 대하여 개정 법률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기득권을 일정한 범위에서 보호하고 있음.
- 기존 수상구조사의 경우 개정 법률 시행 즉시 수상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하나, 기존 민간자격 소지자는 특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수상구조사 지도사 또는 수상구조사 2급 자격을 취득하므로, 기존 민간자격 소지자에게는 기존 자격 유형별로 상응하는 자격의 특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임.

구 분	기존 자격	취득 자격	절 차	비 고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수상구조사 1급	법률 시행 시 자동 취득	부칙 제3조
민간자격	인명구조강사	수상구조사 지도사	특례시험 합격 시 취득	부칙 제2조
	인명구조요원	수상구조사 2급	특례시험 합격 시 취득	부칙 제2조

- 안 부칙 제2조는 향후 수상구조사 자격 제도의 정비를 고려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인명구조 관련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하여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 정 안	수 정 의 건
부칙 제2조(민간단체가 발급한 인명구조에 관한 <u>자격증</u> 소지자의 수상구조사 <u>자격증</u> 취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부칙 제2조(민간단체가 발급한 인명구조에 관한 <u>자격</u> 소지자의 수상구조사 <u>자격</u> 취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에서 발급한 <u>인명구조강사 또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u>을 소지한 <u>사람은 제 3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u>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특례시험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수상구조사 지도사 또는 2급 <u>자격증</u>을 취득할 수 있다.	발급한 <u>인명구조에 관한 자격</u>을 소지한 <u>사람이 이 법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u>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특례시험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수상구조사 지도사 또는 2급 <u>자격</u>을 취득할 수 있다.
---	--

- 기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 성 완)